
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학생의 건강검사 중 건강검진을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이 경우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9조의2에 따른 건강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.

II. 검토의견

안 제7조제6항은 교육부장관이 학생의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0조의4¹⁾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9조의2²⁾에 따른 건강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교육정보시스템은 학생생활기록 등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가, 건강

-
- 1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0조의4(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(이하 “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·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③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·접속방법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 - 2)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9조의2(공단의 업무)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 - 1.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전자적 건강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

정보시스템은 건강검진 등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으로, 시스템 간 연계·활용을 규정할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안 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사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여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³⁾.

더불어, 안 제7조제6항은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을 인용하고 있는데, 법률에서 다른 법률의 하위법령 내용을 인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하위법령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의 조항이 명확할 때에는 ① 하위법령의 개정이 더 빈번하고 용이한 점⁴⁾, ②법률 간 소관 부처가 다르면 인용하는 하위법령의 개정 여부를 즉시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, 해당 법률을 인용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상 조항을 인용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⁵⁾.

이에, 교육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.

3) 「**결핵예방법**」 제7조(결핵관리사업 등) ④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.

1. 「주민등록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
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
3.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
4. 「지역보건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

「**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**」 제12조의2(고독사위기관대응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위기관대응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.

1. 「지역보건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
2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

4) 이 경우, 다른 법률의 하위법령이 개정될 경우,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음.

5) 「**국민건강보험법**」 제14조(업무 등)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

4.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·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「**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**」 제9조의2(공단의 업무)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전자적 건강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

개 정 안	수정의견
제7조(건강검사 등) ⑥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「<u>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</u>」 제9조의2에 따른 건강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.	제7조(건강검사 등) ⑥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「<u>국민건강보험법</u>」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강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. <u>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제2항에 따라 공단에 위탁하는 건강검사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.</u>

(전문위원 이 은 정)